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177
----------	------

2016년 12월 19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6년 5월 4일 김인제 의원외 17명
2. 회부일자 : 2016년 5월 13일
3. 상정일자 : 제271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6년 12월 19일 상정·의결(수정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인제 의원)

1. 제안이유

- 간접흡연은 폐암 및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, 특히 담배연기와 담배꽂초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권, 건강권 침해 소지가 매우 높아 관련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.
- 다수의 시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,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웃 간의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함.
- 2016.9.3. 시행예정인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는 구청장이 「주택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인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,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내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내 안내표지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장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.(안 제7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, 「국민건강증진법」
- 2)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3)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개정된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, 시장이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의 안내표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지원에 대한 규정(안 제7조제4항)

-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이나 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한 바,

안 제7조(금연구역의 표시) ④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및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,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의 피해예방을 촉구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, 시민의 대부분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편안하게 생활해야 하는 주거공간에서의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,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됨.
- 먼저 안 제7조제4항의 상단부의 “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”와 관련하여 「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

법 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

- 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

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6.3.2.>

시행규칙 제6조의3(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)
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16.9.2.]

- 또한 「지방재정법」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(법 제20조1),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(시행령 제32조2)고 명시하고 있음.
- 따라서 자치구청장의 사무로 볼 수 있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경비를 서울시장이 시의 조례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「지방재정법」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만큼,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은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요구되어 입법담당관을 통한 법률 자문과 법제처를 통해 관련의견을 요청한 결과,
- 변호사 법률자문 3건 중 1건은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23조3)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조례 역시 법령의 하나로 보아 조례를 근거로 자치구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며, 조례 개정도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, 나머지 2건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법」의 소관사무 위반 등을 사유로 경비 지원 및 조례 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내었음.
- 법제처에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23조제2항4)에 따라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판단에 의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조례 개정

- 1) 지방재정법 제20조(자치사무에 관한 경비)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.
- 2)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(경비지출의 제한)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,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.
- 3)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(경비지출의 제한)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,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.
- 4) 지방재정법 제23조(보조금의 교부) 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·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자체는 가능하나, 이는 법률의 규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둘 실익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체계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- 집행부에서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에서 안내표지 설치주체를 시·군·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, 시민들의 주된 생활터전으로, 금연문화 정착 시 상징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.
- 다음으로 안 제7조제4항의 하단부의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”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에서 각호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금연구역은 그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표지설치의 주체로 규정하였음.
- 즉 「국민건강증진법」과 현행 조례를 통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에서 구청장에게 설치의무를 명시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
- 따라서 이미 법에서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안내표지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어린이놀이터만을 시비로 지원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.
-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에 안내표지 설치주체를 공동주택과는 달리 해당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고 있고, 어린이 놀이시설의 종류가 관련 법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)상 14가지에 이르는데 ‘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’에만 특정하여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령체계 및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.
- 한편 조항 내에 “금연구역”이라는 어휘가 반복되고 있어 문법에 맞춰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【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6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7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12월 19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다른 금연구역에 대한 형평성 및 집행의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내표지 설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의 안내표지 설치경비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7조제4항)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,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